

위생사 면허증 [] 재발급 [] 재부여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 3일
신청인	성명	면허번호	사진 (3.5cm×4.5cm)
	생년월일		
	주소		
재발급· 재부여 사유	[]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[] 면허증을 못쓰게 된 경우 []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		

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6조의2제8항·제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재부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보건복지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면허증(면허증을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분실사유서 1부(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4.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(3.5cm × 4.5cm) 2장
수수료 (2000원)	1. 문서(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)로 신청하는 경우: 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. 2.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: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합니다.

처리 절차

